

목 차

계약서(계획서).....	1
---------------	---

계약서(계획서)

합병 계약서

주식회사 시프트업(대표이사 김형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테이블원(대표이사 지효근, 이하 “을”이라 한다)은 2024년 10월 2일(이하 “본 계약 체결일”) 다음과 같이 합병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갑과 을을 총칭하여 “당사자들”,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칭한다.

제1조 (합병의 방법)

- ① 갑은 을을 흡수합병(이하 “본 건 합병”)하며 그에 따라 갑은 존속하고, 을은 소멸한다.
- ② 합병 후 상호는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합병기일 당시 갑의 상호로 한다.
- ③ 합병 후 본점소재지는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합병기일 당시 갑의 본점소재지로 한다.

제2조 (합병으로 증가할 자본금 및 준비금)

본 계약 체결일 현재 갑의 자본금은 11,666,944,000원이며, 본 건 합병은 무증자합병으로 진행하므로 본건 합병으로 인한 자본금 및 준비금의 변동은 없다.

제3조 (합병비율 및 합병 시에 교부하는 주식의 총수)

갑과 을의 합병비율은 1:0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갑은 본건 합병을 험에 있어 합병신주를 발행하거나 을의 주주에게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 (합병승인 결의)

갑은 2024년 11월 1일에 소규모합병으로서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본 계약 승인 및 본건 합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기로 한다.

을은 같은 날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결의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기로 한다. 다만, 합병 절차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하여 이사회 개최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합병기일 및 합병에 따른 이행 행위 등)

- ① 본 계약에서 정한 합병의 선행조건들이 모두 이행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합병을 할 날(이하 “합병기일”)은 2024년 12월 5일로 한다. 다만, 합병 절차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의 합의로 합병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을은 합병기일에 상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의 자산, 부채 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감에게 인계하고, 감을 이를 승계한다.
- ③ 을은 2023년 12월 31일의 재무상태표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의 자산과 부채의 변동에 대한 계산서 및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동, 소멸에 관한 사실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감에게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합병의 효과)

- ① 감은 합병기일에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 모든 을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관계 일체를 승계한다.
- ② 감은 을의 임직원이 을에 대해 갖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또한 소멸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상응하는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7조 (종업원의 승계)

합병계약일 현재 을에는 재직하는 종업원이 없으므로, 본 합병에 따른 종업원 승계와 관련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8조 (합병으로 인한 등기 임원의 지위 변동)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의 정합에도 불구하고, 본 건 합병에 따라 갑의 등기 임원은 그 잔존 임기 동안 계속하여 그 지위를 유지하며, 을의 등기 임원의 지위는 합병기일에 소멸한다.

제9조 (정관의 변경)

본 건 합병에 따른 갑의 정관변경사항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확약)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이행할 것으로 확약한다.

- ① 당사자들은 본 계약상 합병기일(제5조 1항에 따라 변경된 합병기일을 포함한다) 내에 본 건 합병이 원만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시로 본 건 합병의 진행을 위한 사항을 협의하기로 한다.
- ② 각 당사자는 본 건 합병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본 계약에 따른 전술이나 보증에 위반되는 조건의 발생이나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11조의 선행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는 사정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3자(주주, 채권자를 포함하여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④ 각 당사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비롯하여 본 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승인, 인가, 신고 절차가 합병기일 또는 법령이나 각 당사자들이 체결한 계약상 합병기일 이후의 특정한 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일까지 완료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고, 상대방 당사자는 당사자에 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각 당사자는 (i)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ii)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유지하며, (iii) 사업, 자산, 부채, 재무 상황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 기타 본건 합병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합병의 선행조건)

각 당사자가 본 건 합병을 할 의무는 합병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단, 갑 또는 을은 각자 서면으로 선행 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성취에 대해 포기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가) 갑이 본 건 합병 및 본 계약에 대해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을이 같은 사항에 대해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승인을 받았을 것
- 나) 각 당사자는 그의 주주들과 체결한 계약 또는 부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채권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본 건 합병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호의 승인과 별도로 개별적으로 서면 동의를 받았을 것.
- 다) 각 당사자가 그의 주주들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조건(예, 전환주식의 경우 전환조건) 중 본 건 합병으로 인해 변경하기로 상대방 당사자와 합의한 조건에 대해 변경 계약을 체결할 것.
- 라) 갑의 주주 중 본 건 합병을 반대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20% 미만일 것.
- 마) 각 당사자는 금융기관 채권자로부터 채권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데에 동의를 받을 것.
- 바) 전조에서 정한 확약 기타 본 계약상 의무들이 합병기일까지 모두 이행되고, 중대한 변경이나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

제12조 (해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가) 당사자들이 합병기일 도래 전에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 나) 제11조에 따른 선행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합병기일까지 성취되지 않고, 이로 인해 합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다) 갑 발행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상법 제573조의3 제4항에 따라 소규모합병의 방법에 따른 합병이

불가능해진 경우

- 라) 갑 또는 을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 또는 그들의 경영 상태에 중대하고 부정적인 변화나 영향이 발생(예, 주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신청,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 등)하고, 그러한 사정이 발생할 것을 알았다면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 ② 전항 나)호와 다)호에 따른 해제는 해제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없는 당사자만 행사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도달하는 때에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해제권이 있는 당사자는 일정한 기한 내에 해제의 원인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한의 도래로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정하여 의사표시 할 수 있다.
- ③ 전항 나)호와 다)호의 경우 해제의 원인에 대해 책임 있는 당사자는 다른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보할 책임을 지되, 본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은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제13조 (변경)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당사자 및 거래상황 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합의하에 본 계약서의 내용 및 거래조건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비용)

본 건 합병을 진행하기 위해 합병기일까지 각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세금이나 관련 비용은 제12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 (본 계약의 변경, 보완)

- ① 본 계약은 당사자들 간의 서면 합의로써만 변경되거나 보충, 보완될 수 있다.
- ② 본 계약 체결 전 당사자들 사이에 본 건 합병에 관하여 구두 또는 문서(이메일을 포함한다)로서 주고 받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양해, 합의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어, 본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충, 보완하지 아니한다.

[서명날인 페이지를 위하여 이하 어ண]

갑과 읍은 본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날인하고 각 당사자들이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4. 10. 2.

“갑”

주식회사 시프트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 55, 12층, 13층, 14층, 15층

대표이사 김 형 태 (인)

“을”

주식회사 데이블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97길 71, 1층, 2층

대표이사 지 효 근 (인)